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3
------------	------

발의연월일 : 2017. 6. 30.

발의자 : 윤관석 · 민홍철 · 강훈식

윤호중 · 정성호 · 박찬대

김정우 · 김병욱 · 신창현

전현희 · 신경민 · 이학영

안호영 · 이원욱 · 장정숙

강창일 · 오제세 · 이재정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까지의----- ----- ----- ----- ----- ----- ----- -----.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	제38조(건축물대장) ① ----- ----- -----

<p>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u>보관하여야</u> 한다.</p>	
<p>1. ~ 4. (생 략) <u>&lt;신 설&gt;</u></p>	<p><u>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u>-----.</p>
<p>② <u>제1항에</u>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 -----.</p>